

---

# 노동조합 규약개정안 제안 설명

- 대의원회 제6차 임시회의 심의 결과 -

---

2025. 1. 8.

제19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 본 제안 설명서는 제19대 2차년도 노동조합 제도개선연구위원회 연구활동 결과(원안)이며, 집행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대의원회 제6차 임시회의에 제출하여 심의 완료하였으며, 제80차 임시총회 의결 안건으로 부의할 내용입니다.

## 《〈 제안 요지 〉》

□ 제도개선연구위원회 연구 결과 규약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내용적으로 구분하면, 1. 조합원 구성 확대(제6조) 2. 임원의 임기 확대(제32조) 3. 대의원회 사항(제17조, 제20조) 4. 회의 진행 및 의결 방식 현대화(제29조, 제31조) 5. 자구 수정 및 내용의 조항 이동(제1조, 제3조, 제5조, 제24조, 제33조, 제35조, 제45조) 6. 기타 및 부칙(제28조, 부칙)으로 총 15개 조항입니다.

구분(해당 조항)	개정 취지
1. 제6조(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구성(자격)을 재직자 9~4급에서 9~3급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사회의 안정적 신분 및 권익 보호</li> <li>- 조합원 규모 확대를 통한 노동조합 규모·재정 유지(※ 2012년 4월 규약 개정 시, 5급에서 4급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 당시 조합원 200명대 이하로 축소된 점에 대응한 조치. 현재 조합원 160명대로 현격한 위축 상태)</li> <li>- 사실상 현재 직원인력의 급감으로 인해 상위 직급의 다수화 추세 반영(경영여건의 불안으로 급부보다 승진을 통한 보상 기조가 나타남. 동종 대학도 유사한 인사정책 현상)</li> <li>- 조합원 자격을 직급 기준으로 하되, 주요 해당 보직자가 나타날 경우는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 제한자로 조치</li> </ul> </li> </ul>
2. 제32조(임원의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및 대의원 임기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20대 임기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적 현실 반영: 1997년 노조법 제정 이후 대부분의 노조와 연합(전국)단체의 3년제 임원 임기 반영</li> <li>- 노조 운영의 안정성: 각종 교섭의 계획(준비) 기간 확보 및 진행의 시간적 보장, 정책 수립 및 사업의 연속성 추진(단체 교섭의 실질적 현실적 대응 기간이 6개월 이상, 타결을 위한 준비 기간도 이와 준한다는 실제적 경험)</li> <li>- 사측에 대한 견제력 강화: 대학 총장·재단 임원 및 사회일반 기관 대표의 임기가 4년인데, 노조임원의 임기는 노조법 제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3년이 최대치임(독소 조항), 이에 따른 영향력을 제고가 요구됨</li> </ul> </li> </ul>
3. 제17조(구성과 선출 및 임기), 제20조(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의원회의 결원이 발생 시, 보충을 통한 대의성 유지</li> <li>■ 대의원회에 규약을 제외한, 하위 규정 및 규칙 류의 제·개정 권한 부여</li> </ul>
4. 제29조(회의 진행), 제31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방식의 현대화: 온라인 전자식 방법 채택</li> <li>■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대의원회 의결을 통한 온라인 전자식 투표 가능</li> </ul>
5. 제1조(명칭), 제3조(사업), 제5조(가맹), 제24조(기능), 제33조(임무와 권한), 제35조(임무), 제45조: 없음(오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조법에 따른 명칭 변경 명시(자구 수정) ■ 노조법과 용어 동일화: 자구 수정</li> <li>■ 조항 표시 수정 ■ 조항 내용 이동</li> <li>■ 제45조: 조문 표시 번호의 탈기와 추정(2008. 3. 1. 개정 시 발생)</li> </ul>
6. 제28조(특별결의),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조법 원용 조항의 추가 신설 ■ 시행일 변경, 경과 조치 등</li> </ul>

### 1. 제도개선연구위원회 운영 근거: 제37차 정기총회(2024. 9. 5.) 결의 사항

### 2. 운영 목적

- 가. 노조법에 의거, 한국노총 표준규약 및 현행 일반 노조 규약의 핵심 사항 도입을 통한 본 노조 규약의 현대화
- 나. 현실 부합·상호충돌 조항 점검, 문구의 구체화, 불비한 과거 조항 등 개선 통해 규약 해석 및 적용의 이견 해소

### 3. 제도개선연구위원회 구성

구분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성명	김두원	김호엽	이철환	인기채	조규석	최영습
비고	대의원	조합원	노조위원장	간사(법규부장)	대의원	조합원

### 4. 주요 개정 연구 내용

- ① 제1조(명칭): 연합단체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단체 명: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 한국대학교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 ② 제3조(사업): 자구 수정
- ③ 제5조(가맹): 자구 수정
- ④ 제6조(구성)
  - 3급 이상 재직 직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 대학 소속 입회자가 법인 전출입 인사 조치 시에 자격 유지(단서 추가)
- ⑤ 제17조(대의원회 구성과 선출 및 임기)의 ③항: 결원 대의원에 대한 대체 방법(보궐 선거)
- ⑥ 제20조(대의원회 기능): 규정 및 세칙의 제·개정의 의결권 부여, 자구 수정 등
- ⑦ 제24조(회계감사위원회 기능): 조항표시 수정
- ⑧ 제28조(특별결의): 노조법 의거 조직 합병, 해산 관련 추가

- ⑨ 제29조(회의 진행): 회의 방법의 현대적 개선
- ⑩ 제31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온라인 전자식 투표로 선출 가능(대의원회 결의)
- ⑪ 제32조(임원의 임기): 노조법 등 일반적 노조 규약 근거, 일반적·안정적 노조 운영 위한 임기의 조정(2년 → 3년)
- ⑫ 제33조(임무와 권한) ③사무국장: 제35조로 이동, 조항표시 수정 등
- ⑬ 제35조(임무): 제33조 이동 사항 삽입 등
- ⑭ 제45조의 오탈기에 대한 조항표시(번호) 정정: 2008. 3. 1. 개정 시 발생(확인)
- ⑮ 부칙 명시 사항: 변경 시행일, 임원 임기 발효 시기(20대), 3급 해당자 재가입 시 경과 조치 사항 등

## 5. 연구(개정)안 연구·심의·의결 절차

일정(절차)	내용	비고
2024. 11. 21.	■ 2차년도 제도개선연구위원회 1차 회의	연구주제 점검
2024. 12. 4.	■ 2차년도 제도개선연구위원회 2차 회의	최종 보고서 제안
2024. 12. 10.	■ 2차년도 제도개선연구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서 채택	보고서 확정
2024. 12. 12.	■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보고 및 추진 절차 논의(확정)	
2024. 12. 23.~12. 30.	■ 조합원 안내문: 조합원 사전 설명문 공지	포털시스템 게시 및 메일 발송
2025. 1. 8.	■ 대의원회 임시회의 보고 및 심의	임시총회 안건 확정
2025. 1. 13.	■ 제80차 임시총회: 보고 및 의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6.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개정안

현행	개정안	취지(비고)
<p>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개정: 2021. 06. 01. 전 문</p> <p>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핍박에 대항하여 ... (후략)</p>	<p>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개정: 2025. 1. 13. 전 문</p> <p>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핍박에 대항하여 ... (후략)</p>	<p>⇒ 자구 수정: 개정 일자</p>
<p>제 1 장 총 칙</p> <p>제1조(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u>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대구대학교 노동조합</u>(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p>	<p>제 1 장 총 칙</p> <p>제1조(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u>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대구대학교 노동조합</u>(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p>	<p>⇒ 자구 수정: 연합단체 명칭 변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제11조</p>
<p>제3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2. 조합원의 생활 향상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li> <li>3. 조합원의 교육 및 조직 정비 강화에 관한 사항</li> <li>4. 대학 경영 합리화 추진 및 촉구에 관한 사항</li> <li>5. 대학 자율권 확보에 관한 사항</li> <li>6. 대학 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추진에 관한 사항</li> <li>7. 조합원의 문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li> <li>8.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에 관한 사항</li> <li>9. <u>상급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u></li> <li>10.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제3조(사업) &lt;좌동&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좌동&gt;</li> <li>2. &lt;좌동&gt;</li> <li>3. &lt;좌동&gt;</li> <li>4. &lt;좌동&gt;</li> <li>5. &lt;좌동&gt;</li> <li>6. &lt;좌동&gt;</li> <li>7. &lt;좌동&gt;</li> <li>8. &lt;좌동&gt;</li> <li>9. <u>연합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u></li> <li>10. &lt;좌동&gt;</li> </ol>	<p>⇒ 자구 수정: 노조법과 용어 통일화</p>
<p>제5조(가맹) 본 조합은 <u>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u></p>	<p>제5조(가맹) 본 조합은 <u>연합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u></p>	<p>⇒ 자구 수정: 노조법과 용어 통일화</p>

현행	개정안	취지(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조 직</b></p> <p>제6조(구성) 본 조합은 대구대학교에 재직하는 직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급 이상</li> <li>2. 처장, 부처장, 부속기관장, 소장</li> <li>3. 대학자체직</li> <li>4. 계약직</li> <li>5. 일용직</li> <li>6. 촉탁직</li> <li>7. 기타 조합대의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의결된 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조 직</b></p> <p>제6조(구성) 본 조합은 대구대학교에 재직하는 직원으로 <u>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 본 조합에 입회하고, 재직 중 법인으로 진출된 자는 자격을 유지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급 이상</li> <li>2. &lt;삭제&gt;</li> <li>2. 대학자체직</li> <li>3. 계약직</li> <li>4. 일용직</li> <li>5. 촉탁직</li> <li>6. 기타 조합대의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의결된 자.</li> </ol>	<p>⇒ 자구 수정 및 단서 추가: 조합원 자격</p> <p>⇒ 자구 수정: 3급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 가입하도록 하여 직원의 안정적 신분 유지 및 조합원 규모 확대 취지(부칙 명시)</p> <p>⇒ 2호 삭제 및 대체: 조합활동 제한자에 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같음</p>
<p><b>제 2 절 대의원회</b></p> <p>제17조(구성과 선출 및 임기)</p> <p>① 대의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대의원의 선거구는 각 직능 및 직급별로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정하되, 각 선거구별 조합원 10인당 1인으로 선출하며, 단수 6인 이상일 때 1인을 추가 선출한다.</p> <p>③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하하며, 승진, 전보 등의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유지한다.</p>	<p><b>제 2 절 대의원회</b></p> <p>제17조(구성과 선출 및 임기)</p> <p>① &lt;좌동&gt;</p> <p>② &lt;좌동&gt;</p> <p>③ &lt;좌동&gt;</p> <p>④ <u>대의원회의 최초 전체 선출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충원한다.</u></p>	<p>⇒ 항 신설: 결원 대의원에 대한 보충(궐)을 통한 대의성 유지</p>
<p>제20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시총회 소집요청</li> <li>2.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li> </ol>	<p>제20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좌동&gt;</li> <li>2. &lt;좌동&gt;</li> </ol>	

현행	개정안	취지(비고)
3. 총회에서 수입 사항 집행 4. 조합 운영방침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심의 5. <u>상급 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심의</u> 6. <u>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u> 에 관한 심의 7. 회계감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8. 예·결산에 대한 심의 9. 예산 항목의 전용 승인 10. 단체협약(안) 심의 11. 노사협의회, 소속 단체 파견 대의원, 선거인 및 교내 각종 위원회 노동조합 위원 추천 심의 12.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심의 13.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3. <좌동> 4. <좌동> 5. <u>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심의</u> 6. <u>각종 규정, 규칙, 세칙의 제·개정</u>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좌동> 11. <좌동> 12. <좌동> 13. <좌동>	⇒ 자구 수정: 노조법과 용어 동일화, 띄어쓰기 정정 ⇒ 자구 수정: 대의원회의 의결 기능 부여(규약을 제외한 하위 일반 규정류 제·개정 권한 부여)
제24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행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의원회의 요청이나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3. 각종 감사 결과를 대의원 및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6. 본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회계감사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좌동> 2. <좌동> <u>가.</u>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u>나.</u> 대의원회의 요청이나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 조항 표시 수정
제28조(특별결의) 본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제28조(특별결의) 본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현행	개정안	취지(비고)
<p>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li> <li>2. 임원의 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li> <li>3. 긴급동의의 성립</li> <li>4. 제11조 제1항의 목적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li> </ol>	<p>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좌동&gt;</li> <li>2. <u>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u></li> <li>3. <u>임원의 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u></li> <li>4. <u>긴급동의의 성립</u></li> <li>5. <u>제11조 제1항의 목적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u></li> </ol>	<p>⇒ 호 신설: 노조법 의거</p>
<p><b>제29조(회의 진행)</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제33조 1항 5호에 의한다.</li> <li>② 조합의 각종 회의 결과는 총무 또는 간사가 회의록을 기록, 유지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i> </ol>	<p><b>제29조(회의 진행)</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lt;좌동&gt;</li> <li>② &lt;좌동&gt;</li> <li>③ <u>조합의 각종 회의는 대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u></li> </ol>	<p>⇒ 항 신설: 현대적 규범 및 현실적 상황 고려</p>
<p><b>제31조(임원의 선출과 해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li> <li>2. 임원선거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한다. 다만,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li> </ol> </li> <li>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에 의한다.</li> <li>③ 그 밖의 임원선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li> </ol>	<p><b>제31조(임원의 선출과 해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lt;좌동&g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u>단,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온라인 전자식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u></li> <li>2. &lt;좌동&gt;</li> </ol> </li> <li>② &lt;좌동&gt;</li> <li>③ &lt;좌동&gt;</li> </ol>	<p>⇒ 자구 수정: 현실적 상황 발생 시 현대적 방식 도입 취지</p>
<p><b>제32조(임원의 임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임원의 임기는 2년, 임기 시작일은 8월 1일, 임기 종료일은 7월 31일로 한다.</li> </ol>	<p><b>제32조(임원의 임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임기 시작일은 8월 1일, 임기 종료일은 7월 31일로 한다.</li> </ol>	<p>⇒ 자구 수정: 임원의 임기 변경 시행은 제20대 임원부터 적용(부</p>



현행	개정안	취지(비고)
<p>부서장을 지휘한다.</p> <p>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p> <p>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p> <p>4. 삭제</p> <p>(1) 삭제</p> <p>(2) 삭제</p> <p>(3) 삭제</p>		
<p>제35조(임무) 사무국의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총무부 : 문서와 인장 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지출과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p> <p>2. 조사통계부 : 조사통계자료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p> <p>3. 홍보부 : 조합 활동에 관한 대내외 교육, 홍보, 조직, 계통 및 행사에 관한 사항</p> <p>4. 복지부 :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p> <p>5. 법규부 : 조합에 관한 법규 해설 및 자료정리에 관한 사항</p> <p>6. 쟁의·교육부 : 노동쟁의 활동 및 대책 수립과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p> <p>7. 여성부 : 여성 조합원의 지위 향상에 관한 제반 사</p>	<p>제35조(임무) 사무국장과 사무국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사무국장</p> <p>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부서장을 지휘한다.</p> <p>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p> <p>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p> <p>② 부서</p> <p>1. &lt;좌동&gt;</p> <p>2. &lt;좌동&gt;</p> <p>3. &lt;좌동&gt;</p> <p>4. &lt;좌동&gt;</p> <p>5. &lt;좌동&gt;</p> <p>6. &lt;좌동&gt;</p> <p>7. &lt;좌동&gt;</p> <p>8. &lt;좌동&gt;</p>	<p>⇒ 자구 수정: 제33조 이동 사항</p> <p>⇒ 항 이동에 따른 호 추가 및 자구 수정</p>

현행	개정안	취지(비고)
항 8. 기획부 : 조합 활동에 관한 기획 및 대외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		
※ 2008. 3. 1. 개정 시 조문표시(제45조 탈항) 띄어넘기		
제46조(쟁의행위)	제45조(쟁의행위)	⇒ 조문표시 번호 정정: 이하 제 56조까지 내용 동일
제47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제46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제48조(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결)	제47조(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결)	
제 3 절 노사협의회 제49조(노사협의회)	제 3 절 노사협의회 제48조(노사협의회)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50조(포상)	제49조(포상)	
제51조(징계)	제50조(징계)	
제52조(징계의 종류)	제51조(징계의 종류)	
제53조(징계위원회)	제52조(징계위원회)	
제54조(재심)	제53조(재심)	
제55조(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제54조(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제 11 장 해 산	제 11 장 해 산	
제56조(해산사유)	제55조(해산사유)	
제57조(청산)	제56조(청산)	⇒ 실제 조항 개수로 수정: 총 56개 조항
부칙 이 규약은 2021. 06. 0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2025년 1월 1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제32조(임원의 임기)의 개정에 의한 해석 적용은 제19	⇒ 시행일 변경, 경과 조치 등

현행	개정안	취지(비고)
	<p>대 노동조합 임원은 제외되며, 제20대 노동조합 임원부터 적용한다.</p> <p>3. 노동조합 후생복지비 지급표: ※ [별표-1]</p> <p>4. (경과 조치) 이 개정 규약 제6조(구성)에 따라 조합원이 되는 3급 직원은 2025년 1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한다.</p>	

※ [별표-1]

현행				개정안			
구분	내용	금액	비고	구분	내용	금액	비고
축의금	본인결혼	100,000원	1회	축의금	본인결혼	100,000원	1회
	자녀결혼	100,000원			자녀결혼	100,000원	
조의금	본인	5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조의금	본인	5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부모(시·처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1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부모(시·처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1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전별금	3년이상5년미만	300,000원	3급 승진자와 조기 퇴직자는 중도 퇴직자에 준한다. 단, 2012.04.10일자 개정 규약 제6조에 따라 조합원이 되는 4급 직원에게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별금	3년이상5년미만	300,000원	2급 승진자와 조기 퇴직자는 중도 퇴직자에 준한다. 단, 2025. 1. 13.자 개정 규약 제6조에 따라 조합원이 되는 3급 직원에게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0년미만	500,000원			10년미만	500,000원	
	15년미만	700,000원			15년미만	700,000원	
	15년이상	1,000,000원			15년이상	1,000,000원	
	정년퇴직, 명예퇴직	1,500,000원	정년퇴직, 명예퇴직		1,500,000원		
위로금	본인	70,000원	병가 5일 이상 1개월 미만	위로금	본인	70,000원	병가 5일 이상 1개월 미만
		70,000원	여조합원 자녀출산 축하			70,000원	여조합원 자녀출산 축하
		300,000원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입원 치료한 경우			300,000원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입원 치료한 경우

**노동조합 규약개정안 제안 설명**  
- 대의원회 제6차 임시회의 심의 결과 -

| 노조창립일 | 1988. 2. 13.

| 발행일 | 2025. 1. 8.

| 발행처 | 제19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 전 화 | 053-850-5760

| 팩 스 | 053-850-5764

| 홈페이지 | <https://union.daegu.ac.kr>